

답 변 서

사 건 2000가단000 양수금

원 고 000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 변 취 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답 변 원 인

- 1. 원고는 소외 ●●●로부터 소외 ●●●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20○○. ○. ○.자로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소외 ●●●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채권양도사실을 통지 받은 적도 없어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더불어 임차인인 소외 ●●●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습니다.
- 2. 민법 제450조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원고 가 주장하는 채권의 양도양수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양도양수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3. 원고와 소외 ●●●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이 소외 ●●●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답변서부본

1통

2000. 0. 0.

위 피고 🛇 🛇 (서명 또는 날인)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답면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
기 타	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ㆍ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ㆍ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ㆍ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된 괴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괴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관결). ·용소관함(변론관함)이 생기려면 괴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자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괴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면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차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괴고의 답면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면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관결). ㆍ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이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임(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0033 관결).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없음.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
	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킴(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답변서